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 박선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05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선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2.
3. 회부연월일 : 2024.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를 취업심사대상자로 하고 업무에 유관한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만 요청할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근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심사대상자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등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 ----- ----- ----- ----- ----- ----- ----- ----- ----- ----- ----- -----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 ----- ----- -----

현행	개정안
② ~ ⑤ (생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 제17조는¹⁾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②~⑨ (생략)

인을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 제19조의2는²⁾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요청

2)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필요한 자료를 일괄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또는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중 국세청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소득 관련 자료의 범위를 현행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 외에 “사업소득”에 관한 자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부터 사업소득 형태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취업제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제도가 공직자 등의 퇴직 후 사업적 활동까지 규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취업제한 제도의 규제 대상으로서 사실상의 취업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상반된 의견이 제시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적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봄.

취업제한 제도는 공직자 등이 퇴직 후 민간 사기업체나 법인·단체 등에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혜를 부여하거나 취업한 민간 사기업체나 법인·단체 등을 위해 퇴직 이후에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직자 등의 재직 중 또는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제도임.

“취업”이란 원칙적으로 퇴직공직자 등이 근로계약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임금 등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하겠으나, 현행법 제17조제4항은³⁾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의 형식이나 종류, 상근·비상근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법 제19조의2제1항에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⁴⁾ 제17조제4항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사실상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근로계약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문, 고문, 연구용역, 회의수당, 컨설팅 등 명목의 금전을 주기적으로

3)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⑨ (생략)

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671호, 2019. 12. 3.)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업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2017년)에 따라 입법적 보완 사항으로 제시되어 반영된 것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개념상 소득을 얻는 자가 해당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원칙적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취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나,⁵⁾⁶⁾ 당사자의 신고 여하에 따라 개별적인 소득의 유

5)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③ (생략)

6)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

형은 이같은 개념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관계에서 주기적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취업심사대상자가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자료 제공을 통해 사실상의 취업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반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업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개정안의 입법적 필요성

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성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쇄(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성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 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020. 12. 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⑤ (생략)

이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⁷⁾

반면, 법 제17조제4항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현행법상의 취업제한 제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거나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 사업적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까지 “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현행 취업제한 제도와 구별되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로써 별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에 관한 자료 제공의 필요성은 퇴직공직자의 사업적 활동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며,⁸⁾⁹⁾ 이와 같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봄.

-
- 7)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용역 등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적 활동에 대한 규제가 아닌 취업제한 제도의 대상으로 보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음.
- 8) 개정안과 같이 “사업소득”에 관한 자료까지 국가기관의 장 등이 국세청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소득자료로 명시하는 경우 이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거나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까지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업 개념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해석상 근거가 될 수 있음.
- 9) 취업심사대상자가 법인 등 사업체를 설립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사업적 계약 관계에 따라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까지 이해충돌 방지 제도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취업심사대상자가 설립한 법인 등의 법인세 관련 자료까지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

이렇게 볼 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사업적 계약 관계에 기초하여 재화나 역무를 제공하고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업적 활동 중 어떤 행위를 현행 취업제한 제도에 따른 규제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그 행위 유형의 기준이나 범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논의를 거쳐 입법적 반영 여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창업”의 경우 현행법상 “취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업심사대상자가 사업체를 개설하여 그 사업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바, 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적인 의미의 사업소득을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사실상 취업을 하고 그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내역이나 기타소득 등 현행법상 제공받는 자료로는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소득을 제공받을 필요성도 일정 부분 있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며, 부산광역시도 유사한 입장으로 「공직자

윤리법』상 소득의 형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타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소득자료 제공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